

의안번호	2214023
의 퇴 인	남인순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7.
추계번호	25C6004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등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억 3,750만원(연평균 2억 2,750만원)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돌봄보장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9조의2)	227.5	227.5	227.5	227.5	227.5	1,137.5	227.5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20415호 안 제2조(정의)	통합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포함 ※(법률 제20415호) 노인,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→ (개정안) 노인, 장애인, 정신질환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	의무규정
2	법률 제20415호 안 제5조(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통합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에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포함	의무규정
3	법률 제20415호 안 제6조 (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	지역계획의 내용에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 간의 연계·협력 방안 포함	의무규정
4	법률 제20415호 안 제9조의2 (돌봄보장위원회)	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5	법률 제20415호 안 제11조 (퇴원환자 등의 연계)	퇴원 또는 퇴소하는 자에게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,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에 대해서 시·군·구청장에게 퇴소 여부 등을 통보하고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법률 제20415호 안 제15조(보건의료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 의료서비스, 영양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,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함	의무규정
7	법률 제20415호 안 제18조의2(주거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.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·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·제공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개조 등의 지원 2.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주거이전 지원 3.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	의무규정
8	법률 제20415호 안 제22조(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장애인 활동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법률 제20415호 안 제28조 (비용지원 및 부담 등)	통합지원 관련기관에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법률 제20415호 안 제2조(정의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법률 제20415호 안 제5조(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법률 제20415호 안 제6조(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	×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4	법률 제20415호 안 제9조의2 (돌봄보장위원회)	○	◦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5	법률 제20415호 안 제11조 (퇴원환자 등의 연계)	×	◦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법률 제20415호 안 제15조(보건의료)	×	
7	법률 제20415호 안 제18조의2(주거지원)	×	
8	법률 제20415호 안 제22조(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×	
9	법률 제20415호 안 제28조 (비용지원 및 부담 등)	×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개정안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, 기본계획에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내용을 포함하며, 보건의료·일상생활돌봄·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안 제2조·제5조·제6조·제11조·제15조·제18조의2·제22조·제28조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,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여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본 추계서는 안 제9조의2 돌봄보장위원회 설치·운영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만 추계하여 제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른 돌봄보장위원회와 유사한 규모(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)인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, 2025년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운영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돌봄보장위원회 운영에 동일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3조는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
 - 2024년 말 기준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총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, 2024년 대면회의 8회, 서면회의 4회 등 총 12회의 회의(본회의·분과회의)를 개최
 -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¹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에 편성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은 2억 2,750만원
 - 위원회 회의수당 1억 7,250만원, 자료 작성 및 속기료 등에 5,600만원 편성
- 추계결과,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억 3,750만원(연평균 2억 2,75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돌봄보장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227.5	227.5	227.5	227.5	227.5	1,137.5	227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예산은 매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되다가 20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,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됨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